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단133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신

담당변호사 지혜롭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김기현, 손정원, 이현지

변론 종결 2024. 4. 18.

판결 선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20. 10. 31. 소외 망 F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1. 1. 소외 망 F에게 이 사건 마트(시설, 집기, 재고물품 일체 포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트매매계약서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소외 망 F

1. 건물 보증금: 삼천만원(₩30,000,000)

임대료: 사백만원(₩4,000,000)

2. 시설권리금: 일금구천만원(₩90,000,000)

3. 마트 내 시설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거래처 미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처와 미수확인 후 매수인이 책임지고 결제한다.

가. 2020년 11월 2.일부로 현재 E마트 거래처의 미수금액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한다.

나. 단, 거래처에서 미수승계를 거부할 경우, 미수금액은 매수인이 결제하고 거래를 종결시킨다.

(중략)

[지불 방법]

1. 계약금: 매수인은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 1차: 매수인은 일금 사천오백만원(₩45,000,000)은 매수인이 현재 거주중인 전세주택 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 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가. '전세주택 부동산' 위치: 경기도 파주시 G건물 H호

나. '전세주택 부동산'은 이후 편의상 'A'라 칭하기로 한다.

3. 중도금 2차: 매수인은 오픈 행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차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가. 2차 중도금 내역: E마트 재고조사 결과금액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거래처 미수를 제외한 금액

4. 부동산중개 특성상 'A'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일정이 2차 중도금 지급일보다 늦어질 경우

2차중도금을 1차중도금으로 전환하고 'A' 전세보증금을 본 계약의 2차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가. 중도금을 미입금 시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5. 잔금은 2020년 12월 24.일(금)까지 매수인이 일금 삼천오백만원(₩35,000,000원)을 현재

매수인이 운영 중인 I마트(파주시 J 1층) 보증금을 반환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소외 망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계약금 1,000만 원, 2020. 12. 28.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남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4. 29. 소외 망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2942호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소외 망 F은 위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8. 25.경 사망하였고, 소외 망 F의 유일한

상속인인 어머니 K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관련 민사소송은 2022. 4. 19.경 '소외 망 F의

소송수계인인 위 K이 소외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22. 5. 31.까지 원고에게

207,730,435원 및 그 중 117,730,435원에 대하여는 2021. 5. 11.부터,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1.부터 각 2022. 5. 3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망 F은 사망 전날인 2021. 8. 24.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는, ① 이 유언장

작성과 동시에 소외 망 F의 예금과 신용카드의 출금을 위임하며 출금한 돈은 직원 임금, 병원비,

장례비용에 지출해 달라, ② 소외 망 F이 결제하지 않고 납품받은 L마트1)의 물품은 직원의 확인을

거쳐 납품자에게 반품해달라, ③ 소외 망 F이 결제하였거나 직접 구매한 L마트의 물품과 자동차는

적의 처분하되,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여 부족할지 모르는 직원의 임금, 병원비, 장례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고, 여분이 있다면 사후 행정비용과 결제를 못한 물품대금 등으로 지출해달라, ④ 이

유언은 피고가 집행해달라는 의사(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가 표시되어 있다.

바. 피고는 소외 망 F의 고모로서, 2021. 8.말경부터 이 사건 마트 내 시설, 집기, 재고물품 등을 처분하여 이 사건 마트를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망 F 및 그 상속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인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유언집행자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권한을 넘어서 이 사건 마트 내 시설 및 집기를 무단으로 반출 및 처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소외 망 F 및 그 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9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망 F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된 채권)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구체화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인 소외 망 F의 사망 직후 이 사건 유언장의 취지에 따라 소외 망 F의 영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마트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처분한 것이어서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원고의 소외 망 F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가사 피고가 위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원고의 소외 망 F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한 처분행위는 각 시설 및 물품공급사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시설 및 물품을 원소유권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소외 망 F의 책임재산, 즉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소외 망 F의 상속인과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원고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망 F의 유언집행자로서 영업장 정리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피고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는데 그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는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외 망 F의 유언에 따라 마트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처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⑤ 그 밖에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망 F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성욱

1) 이 사건 마트와는 별도로 소외 망 F이 파주시에서 운영하던 마트이다.